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보 도 자 료 | | | |
| | 보고 | 2016. 11. 4.(금) 조간 | 배포 | 2016. 11. 3.(목) |

| | | | |
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기관 | 금융감독원 | 보험감독국 | 진태국 국장(3145-7460), 김봉균 팀장(3145-7471) |
| | 생명보험협회 | 시장지원부 | 최성림 부장(2262-6630), 홍성환 팀장(2262-6657) |
| | 손해보험협회 | 보험업무부 | 최윤석 부장(3702-8531), 황선홍 팀장(3702-8539) |

제 목 :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
 (「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」 과제 9-3 세부 실행방안)

- ▶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인정기준 대폭 상향조정(30만원→100만원)
- ▶ 서면, 온라인 등 청구방법과 관계없이 청구서류 사본 인정기준 통일
- ▶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안내장 개편
- ▶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바일 앱·홈페이지 개발

I. 추진배경

-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시에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, 다수의 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·시간 소요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
 - 그간 비대면 청구제도 도입, 청구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하였으나, 여전히 “보험금 청구는 어렵고 불편하다”는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보험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
- 이에 금융감독원은 「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」의 일환으로 현행 보험금 청구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여
 -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서류 운영기준 개선방안을 마련

II. 현황 및 문제점

1 현황

- (청구현황) '15년 전체보험금 청구건수(24,725천건) 중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청구건(16,221천건)이 가장 많으며(65.6%),
 - 자동차사고 등 보험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손해보험(17,452천건)이 생명보험(7,273천건)보다 약 2.4배 많은 상황

< '15년 금액별 보험금 청구건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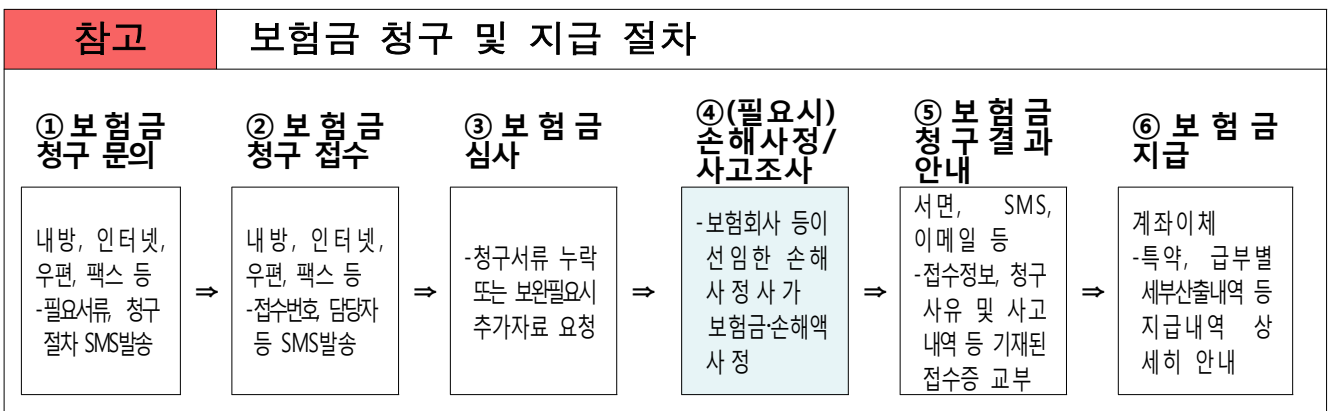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건, %)

| 구분 | 30만원 미만 | 30만원~50만원 | 50만원~100만원 | 100만원~300만원 | 300만원 이상 | 계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생명보험 | 3,960 (54.4) | 1,039 (14.3) | 1,079 (14.8) | 760 (10.4) | 435 (6.0) | 7,273 (100.0) |
| 손해보험 | 12,261 (70.3) | 1,677 (9.6) | 1,807 (10.4) | 1,229 (7.0) | 478 (2.7) | 17,452 (100.0) |
| 합계 | 16,221 (65.6) | 2,716 (11.0) | 2,886 (11.7) | 1,989 (8.0) | 913 (3.7) | 24,725 (100.0) |

- (청구절차) 지점, 설계사 방문 등 대면방식 및 우편, 팩스, 인터넷 등 비대면방식 중 소비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*하여

* 다수 보험사는 고액보험금(통상 100만원 이상)은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해 청구방법을 방문 및 우편접수로 한정하여 운영

- 보험금 청구서(회사양식) 및 관련 증빙자료(진단서 등)를 제출 후 보험사가 서류의 적정성 확인, 사고조사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



- (청구서류) 보험사고(사망 등)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별로 보험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

2 문제점

① 보험금 청구서류의 사본인정 기준 상이

- 일반적으로 청구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,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예외적으로 서류 위·변조 우려가 낮은 소액보험금 청구시에 한정하여 사본을 인정하고 있음
- 다만, 소액보험금 기준(최소 30만원 이상)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는 동일한 서류를 수차례 발급하게 되어 금전*, 시간 낭비 초래

* 서류발급비용(입퇴원확인서 1~2천원, 일반진단서 1~2만원, 상해진단서 5~20만원) 추가부담

금액별 청구서류 사본인정 기준(현행)

| 구분 | ~30만원 | ~40만원 | ~50만원 | ~100만원 | 100만원~1천만원 |
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생보 | 15개사 | 1개사 | 7개사 | | 1개사 |
| 손보 | 3개사 | | 5개사 | 1개사 | 6개사 |

- 또한, 소액보험금 기준에 부합함에도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시에는 원본만을 요구하여 소비자의 불편 가중

② 불필요한 서류 이중 청구

- 일부 보험사의 경우 기본 제출서류로 보험금 심사가 가능한 부분 까지도 관행적으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청하여 불편 초래

* 예) ① 보험금 청구서에 수익자 주민번호,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계좌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도 통장사본을 요구
 ② 사망보험금 청구시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사실을 확인 가능함에도 기본증명서를 추가요구
 ③ 입원비 청구시 입퇴원 확인서에 기재된 진단명을 통해 병명 확인이 가능함에도 진단서를 추가요구

③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청구서류 안내장

- 소비자가 청구서류 중 선택 가능한 서류임에도 청구서류 안내장에 병렬식으로 단순 나열함으로서 불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도록 하여 금전, 시간 낭비 초래

| 구분 | 실제 필요한 서류 | 안내장에 기재된 내용 |
|----|--|--|
| 통원 | * 진단명·통원일(기간)이 포함된 서류 중 택1 ① 통원확인서 ② 진단서 | - 진단서·통원확인서·(통원일자별) 처방전·진료확인서·소견서·진료차트 등 |
| 골절 | *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·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① 의사소견서 ② 통원확인서(입·퇴원확인서) + X-RAY결과지 ③ 진단서 | - 진단서·처방전·진료확인서·소견서·진료차트 등 |

④ 인터넷 보험금 청구시 불필요한 회원가입 요구 등

- 인터넷 활용인구의 증가 및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 다수의 보험사(7개사)가 불필요한 회원가입을 요구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,
 - 보험사가 청구 편의성 증진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으로 모바일 앱(홈페이지) 개발·보급이 미흡(16개사만 운영, 41%)
- 이로 인해 인터넷 등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구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소 불편한 대면, 팩스 등을 활용(75.4%)할 수 밖에 없는 상황

보험금 청구방법별 비중('15년, 대형 6개사*)

(단위 : 천건, %)

| 대면 | 비대면 | | | | | 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우편 | 팩스 | 인터넷 (모바일 포함) | 기타 | 소계 | |
| 5,797 (46.5) | 543 (4.3) | 3,608 (28.9) | 639 (5.1) | 1,897 (15.2) | 6,687 (53.5) | 12,484 (100.0) |

* 대형 6개사 : 교보생명, 한화생명, 삼성생명, KB손보, 동부화재, 삼성화재 / 기타 : 민원접수, 설계사를 통한 접수 등

Ⅲ. 개선방안

1.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인정기준 상향 조정

- 보험사별로 사본인정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100만원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도록 개선
 - 이를 통해 다수(15년 기준, 88.3%)의 보험금 청구권자가 서류의 이중 발급으로 인한 금전, 시간 부담 경감
- 이와 더불어 대면, 비대면 방식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·운영토록 개선하고,
 -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에 동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정비

| 현 행 | 개 선 |
|---|---|
| 회사별로 소액보험금 기준(사본인정기준)을 30만원 이하, 50만원 이하, 100만원 이하 등 상이하게 운영 | 소액보험금 기준(사본인정기준)을 최소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|
| 방문, 우편접수시 사본인정기준과 무관하게 원본만을 요구 | 보험금 청구방법과 무관하게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|

2.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 폐지

- 보험금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고, 보완적·이중적인 추가서류를 폐지하여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
 -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대상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여 소비자의 오해 불식

| 구 분 | 현 행(일부회사) | 개 선 |
|--------|--|--|
| 통장사본 | 관행적으로 모든 보험금 청구시 필수 서류에 포함 | 수익자 사전등록계좌, 입출금 등 거래내역이 있는 계좌 등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 요구 제외 |
| 기본증명서* | 사망보험금 청구시 사망진단서, 기본증명서 동시 요구 | 사망진단서(원본)만 요구 (기본증명서 제외) |
| 진단서 | 입원급여금(정액, 1일당) 청구시 진단서 및 입·퇴원확인서 동시 요구 | 입원급여금(정액, 1일당) 청구시 진단명, 입원기간이 포함된 입·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 |

* 호적제 폐지 이후 새로 생긴 서류로서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 기본적인 사실 기재(출생, 국적변경, 개명, 친권, 사망 등 포함)

3. 소비자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

□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시 청구서류 안내장을 통해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

- 보장내역별 필수 및 선택서류를 구분·안내하여 서류준비를 위한 시간·비용 낭비 등 불편을 없애도록 개선
- 아울러 선택가능한 서류 중 준비비용이 저렴한 순으로 배치하고, 무료서류 발급방법, 서류 준비비용 조회 방법 등을 안내*하여 청구비용의 최소화 도모

* 기본증명서 등은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하며,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병원약국-비급여진료비정보) 참고

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(예시)

| 보장내역 | 현 행(일부회사) | 개 선 | |
|------|--|------------|--|
| 사망 | -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 또는 사본 (원본대조필 포함) -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| 공통 (선택) | ①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 ②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 및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 |
| | 재해사고 - 사고입증서류 * 사망사고시 청구서류가 아닌 공통서류로 표기 | 재해 (기본) | ①재해입증서류 |
| 통원 | -진단서 -통원확인서 -소견서 -진료차트 등 | 공통 (선택) | * 진단명·통원일(기간)이 포함된 서류 ①통원확인서 ②소견서 + 진료차트 ③진단서 |
| | | 재해 (기본) | ①재해입증서류 |

※ '선택'으로 표시된 경우, 열거된 서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됨

4. 간편청구를 위한 모바일 앱·홈페이지 개발

- (비회원 보험금 청구)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

| 현 행 | 개 선 |
|--|--|
| 일부사(7개사)는 보험금 청구시 <u>회원가입 필수적으로 요구</u> | 회원이 아닌 소비자의 경우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<u>비회원 보험금청구 메뉴 신설</u> |

- (모바일 앱 개발)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쉽고 간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(홈페이지)을 개발하여 제공('17년 상반기)
 - 특히 별도 서류 작성 필요없이 청구내용을 스마트폰에 바로 입력하고, 증빙서류를 즉석에서 촬영·제출하는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

모바일 앱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화면(예시)

| ① 보험금 접수화면 | ② 계약사항조회 | ③ 청구내용 입력 | ④ 증빙서류 즉석 촬영 제출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| |

IV.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시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과제를 신속 추진할 계획

| 구 분 | 과제명 | 시행시기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 | '16년 11월 |
| 2 |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채널별 사본인정기준 통일 | '16년 11월 |
| 3 | 사본인정기준 상향 조정 및 모바일 앱(홈페이지) 구축 | '17년 상반기 |

V. 기대효과 (국민들이 좋아지는 점)

① 보험금 청구시 서류 발급비용 절감

- 사본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청구자의 88.3%가 서류발급비용* 절감혜택을 받게 되고, 동일 서류 추가발급을 위한 시간절감 가능

* 서류발급비용 : 입퇴원확인서 1~2천원, 일반진단서 1~2만원, 상해진단서 5~20만원 등

②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준비부담 감소

-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소비자가 하나의 서류만 준비하면 다수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금전, 시간 낭비 등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

③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편의성 대폭 증대

- 청구서류 작성부터 증빙서류 촬영·제출까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일괄적인 신청이 가능하여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

④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

-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보험금 청구를 쉽고 간편하게 개선하여 보험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

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'금융관행 개혁 포털'(<http://better-change.fss.or.kr>) 내 '국민 참여방'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참고

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안(생명·장기손해보험)

| 보장내역 | | 청 구 서 류 | | 발급처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통 | 기본 | ①보험금청구서 ②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③신분증 사본 | |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|
| | 추가 | ①통장사본(사전 미등록 계좌) | | 금융기관 |
| 사망 | 공통 | 선택 | ①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 ②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 및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 |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* |
| | 재해 | 추가 | ①재해입증서류* | 서류별 상이 |
| 입원비 | 공통 | 선택 | *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·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입·퇴원확인서 ②진단서 | 의료기관 의료기관 |
| | 재해 | 추가 | ①재해입증서류* | 서류별 상이 |
| 통원비 | 공통 | 선택 | *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·통원일(기간)이 포함된 서류 ①통원확인서 ②소견서 + 진료차트 ③진단서 |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|
| | 재해 | 추가 | ①재해입증서류* | 서류별 상이 |
| 후유장해 | 공통 | 선택 | ①후유장해진단서 *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①(일반)진단서 | 의료기관(종합병원) 의료기관 |
| | | 추가 | *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필요서류 ②만성신부전 : 혈액투석(최초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) ③사지절단(절단부위 명시) : X-RAY결과지 ④인공관절치환술(치환일자, 부위 명시) : 수술기록지 ⑤비장·신장·안구적출(적출일자, 부위 명시) : 수술기록지 ⑥장기전절제(절제일자, 부위 명시) : 수술기록지 |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|
| | 재해 | 추가 | ①재해입증서류* | 서류별 상이 |
| 수술 | 공통 | 기본 | ①진단명(질병분류코드)·수술명·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[예:수술확인서, 진단서 등] | 의료기관 |
| | 재해 | 추가 | ①재해입증서류* | 서류별 상이 |
| 고절 | 공통 | 선택 | *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·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①의사소견서 ②통원확인서(입·퇴원확인서) + X-RAY결과지 ③진단서 |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|
| | 재해 | 추가 | ①재해입증서류* | 서류별 상이 |
| 치료 | 선택 | *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·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입·퇴원확인서 ②진단서 | | 의료기관 |
| | 추가 | ①재해입증서류* | | 서류별 상이 |
| 진단 | 공통 | 기본 | ①진단서(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) | 의료기관 |
| | 암 | 기본 | ①조직검사결과지 -백혈병 :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-뇌/폐/췌장암 : 방사선 판독결과지(조직검사 못할 경우) -간 : 방사선 판독결과지(조직검사 못할 경우) 및 혈액검사 결과지 | 의료기관 |
| | 뇌졸중 | 기본 | ①CT,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 | 의료기관 |
| | 심근경색 | 기본 | ①각종 검사결과지(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, 심전도결과지, 근효소결과검사지 등) | 의료기관 |
| 태아 | 신생아 입원비 | 기본 | ①출생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) ②입·퇴원확인서(진단서) | 의료기관(주민센터*) 의료기관 |
| | 유산 | 기본 | ①진단서 | 의료기관 |
| | 사산 | 선택 | ①사산증명서 ②진단서 | 의료기관 |
| 실손의료 | 입원 | 기본 | ①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| 의료기관 |
| | | 선택 | *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·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입·퇴원확인서 ②진단서 | 의료기관 |
| | 통원 (외래·처방) | 기본 | ①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| 의료기관 |
| | | 선택 | *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·통원일(기간)이 포함된 서류 ①통원확인서 ②진단서 ③처방전 | 의료기관 |

- 1)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시(www.minwon.go.kr) 등에서 발급 가능
- 2) 의료기관에 대한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(http://www.hira.or.kr) 홈페이지(병원·약국·비급여진료비정보) 참고
- 3) 재해 입증서류 예시 - ①교통사고 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, 손해보험사, 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확인서
②산업재해 :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, ③군인재해사고 : 공무상병인증서
④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: 법원판결문, ⑤기타 재해사고 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
⑥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: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
⑦자살 :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
- 4) 동 안내장은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서 **보험수익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대리청구, 단체보험 등의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, 보험사에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참고

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안(교통사고)

| 보장내역 | | 청구서류 | 발급처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|
| 공통 | 기본 | ①보험금청구서 ②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③청구인 신분증 사본 ④사고입증서류(교통사고사실확인서 등) |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경찰서 | |
| | 추가 | ①통장사본(사전 미등록 계좌) ②가족관계 확인서류 | 금융기관 관공서 | |
| 입원비 | 기본 | ①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* 진단명·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②입·퇴원확인서 ③진단서 | 보험회사 의료기관 의료기관 | |
| 통원비 | 기본 | ①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* 진단명·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②통원확인서 ③소견서 + 진료차트 ④진단서 | 보험회사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| |
| 사망 | 선택 | ①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 ②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 및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 | 의료기관 의료기관(주민센터*) | |
| 후유장해 | 선택 | ①후유장해진단서 *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①(일반)진단서 | 의료기관(종합병원) 의료기관 | |
| | 추가 | *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필요서류 ②만성신부전 : 혈액투석(최초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) ③사지절단(절단부위 명시) : X-RAY결과지 ④인공관절치환술(치환일자, 부위 명시) : 수술기록지 ⑤비장·신장·안구적출(적출일자, 부위 명시) : 수술기록지 ⑥장기전절제(절제일자, 부위 명시) : 수술기록지 |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| |
| 긴급비용 | 기본 | ①견인비 영수증 ②수리비 견적서 | 수리업체 수리업체 | |
| 차량 손해 위로금 | 사고발생 시 | 기본 | ①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| 보험회사 관공서 |
| | | 선택 | ①폐차 시 : 폐차확인원, 수리불능확인서 ②차량수리 시 : 차량수리견적서 | 수리업체 수리업체 |
| | 도난 | 기본 | ①도난사고사실확인원(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급) | 경찰서 |
| 면허정지위로금 | 기본 | ①면허정지확인원(교육 이수 후) ②운전경력 증명서 | 경찰서 경찰서 | |
| | 추가 | ①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서 | 경찰서 | |
| 면허취소위로금 | 기본 | ①면허정취소인원 ②운전경력 증명서 | 경찰서 경찰서 | |
| | 추가 | ①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확인원 | 경찰서 | |
| 벌금 | 기본 | ①벌금납부 영수증 ②법원 판결문, 약식명령문 | 법원 법원 | |
| 형사합의지원금/ 교통사고수습지원금 | 기본 | ①피해자진단서 ②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(합의금액 명시) ③공소장 ④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(미합의 시) ⑤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| 경찰서 경찰서 법원 법원 금융기관 | |
| 생활안정지원금 | 선택 | ①출소증명원 ②판결문, 구속영장(재소·출소증명서) | 법원 법원 | |
| 변호사선임비용 등 | 기본 | ①판결문, 구속영장(재소·출소증명서) ②공소장(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제외) ③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(변호사 선임비용담보 청구서) | 법원 법원 변호사 사무소 | |

- 1)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시(www.minwon.go.kr) 등에서 발급 가능
- 2) 의료기관에 대한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(http://www.hira.or.kr) 홈페이지(병원·약국·비급여진료비정보) 참고
- 3) 재해 입증서류 예시 - ①교통사고 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, 손해보험사, 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확인서
②산업재해 :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금지급확인서, ③군인재해사고 : 공무상병인증서
④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: 법원판결문, ⑤기타 재해사고 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
⑥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: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
- 4) 동 안내장은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서 **보험수익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대리청구, 단체보험 등의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, 보험사에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